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508호 2020. 4. 22(수)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90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안) 공고·열람 ----- 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690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가) 공업용지 (변경)

[기 정]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펼 지	비 고
				면적(㎡)	면적(㎡)	
I	I -9	32,935.3	1	7,602.7	-	주3) 획지 분할 가능 (북항목재단지)
			2	17,317.8	-	
			3	8,014.8	-	
	I -10	22,995.3	1	22,995.3	-	
	I -11	19,564.7	1	12,479.8	-	
			2	1,814.3	-	
			3	1,600.0	-	
			4	2,070.6	-	
			5	1,600.0	-	
	I -12	12,437.5	1	7,923.4	-	
			2	4,514.1	-	
	I -13	5,405.7	1	5,405.7	-	

[변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필 지	비 고
				면적(㎡)	면적(㎡)	
I	I-9	32,935.3	원창동 488	-	4,024.6	주3) 필지 분할 가능 (북향목재 단지)
			원창동 488-1	-	2,529.5	
			원창동 488-2	-	3,214.5	
			원창동 488-3	-	3,578.1	
			원창동 488-4	-	2,529.3	
			원창동 488-5	-	2,529.3	
			원창동 488-6	-	2,529.3	
			원창동 488-7	-	2,400.1	
			원창동 488-8	-	2,400.1	
			원창동 488-9	-	2,400.2	
			원창동 488-10	-	2,400.2	
			원창동 488-11	-	2,400.1	
	I-10	22,995.3	원창동 489	-	2,532.5	
			원창동 489-2	-	13,223.2	
			원창동 489-3	-	2,611.6	
			원창동 489-4	-	4,628.0	
	I-11	19,564.7	원창동 498	-	2,937.6	
			원창동 498-1	-	1,814.3	
			원창동 498-2	-	1,600.0	
			원창동 498-3	-	2,070.6	
			원창동 498-4	-	1,600.0	
			원창동 498-5	-	1,651.2	
			원창동 498-6	-	1,651.2	
			원창동 498-7	-	1,651.1	
			원창동 498-8	-	1,651.1	
			원창동 498-9	-	2,937.6	
	I-12	12,437.5	원창동 497	-	1,983.5	
			원창동 497-1	-	2,313.9	
			원창동 497-2	-	1,978.2	
			원창동 497-3	-	1,978.3	
			원창동 497-4	-	1,983.4	
			원창동 497-5	-	2,200.2	
	I-13	5,405.7	원창동 496	-	5,405.7	

[기 정]

■ 목재단지(I-9~13) 단서조항

구 분	최소 획지구모	비 고
공업용지 (I-9, I-10)	2,400㎡ ^{주1)} 이상	대지의 분할·합병 허용 ^{주2,3)}
공업용지 (I-11, I-12, I-13)	1,600㎡ ^{주1)} 이상	대지의 분할·합병 허용 ^{주2,3)}

주1) 산업단지 개발 업무편람상 내륙경공업 기본획지 1,600㎡ 적용, 대로변의 경우 차량출입 최소화를 고려하여 2,400㎡ 적용

주2) 무분별한 필지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요건 충족시 분할가능

- 분할요건 : 최소획지구모 이상, 세장비 1:1~2의 장방형 또는 정방형 형태, 1면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차량진출 입불허구간 제외)에 모두 만족할 경우

주3) 획지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분할된 필지에 한하여 당초 획지계획으로의 합병만 허용함

[변 경]

■ I-9~13 (북향목재단지) 필지 분할 요건

구 분	분할요건	기 타
필지형태	정방형 또는 장방형(1:1~2이하)	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분할 가능 ※ 분할된 필지의 합병 시 동일 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
필지구모	I-9, I-10: 2,400㎡ ^{주1)} 이상 I-11, I-12, I-13: 1,600㎡ ^{주1)} 이상	
전면도로	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주1) 산업단지 개발 업무편람상 내륙경공업 기본획지 1,600㎡ 적용, 대로변의 경우 차량출입 최소화를 고려하여 2,400㎡ 적용

나) 상업용지 (변경 없음)

다) 자연녹지용지 (변경 없음)

라) 기반시설용지 (변경 없음)

마) 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II.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Ⅲ.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3, 서구 서곶로 307)

Ⅳ.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됨)

의견서

일 시	2020. . .
성 명	
주 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 락 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사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